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93

발의연월일: 2022. 1. 27.

발 의 자:이원욱·김주영·조승래

백혜련 · 양향자 · 소병철

장경태 · 고용진 · 홍익표

전용기 · 김철민 · 양정숙

강득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,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 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 는 한편,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 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.

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 5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지식재산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의 육성) ① 정부는 지식재 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5조의2(지식재산 관련 비영리
	법인・단체의 육성) ① 정부는
	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
	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
	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
	성하여야 한다.
	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
	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
	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	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	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
	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